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따른 시 사후관리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AI-SOP



◎입식시험 실시요령

1. 입식시험의 준비

- 1) 시장·군수는 별표 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농장 포함)에 대한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해 소독·시험가축 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축사내외·진입로·농장내 사택·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식시험전 점검표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 1)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

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2)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3) 시험가축의 종류 및 마리수는 다음과 같다.
 -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 축사당 신란계 중추(6~12주령) 최소 5수 이상(단, 축사규모별 시험수수 증가)

3. 입식시험의 방법

1)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발생농장에 대한 분변검사(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2)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란계·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 내를 이동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입식시험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 4)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3주간으로 한다.
- 5)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 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6)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3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7)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축의 재사육을 허용한다.

◎종식 선언시까지 사후관리요령

1. 시·도지사는 종식선언시까지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 기간동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해당 시·도지사, 해당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해당 시장·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오염·위험·경계지역의 방역규제 해제 및 발생종식 선언

1. 오염·위험지역
 - 1) 시장·군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위



집중탐구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따른 '시 사후관리'

험지역과 오염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하고 경계지역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오염·위험지역으로 포함되어 폐쇄된 부화장은 위험지역이 경계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을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2. 경계지역

1) 경계지역(오염지역·위험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경계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과 오리검사(혈청검사,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오염·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은 동 경계지역 방역규제 해제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조치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종식시 그 결과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통보한다.

◎종식후속대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혈청검사,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의 소유자에게 폐사 마리수 산란율 등의 상황을 주 2회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농장에 출입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 : 바이러스 검사, 오리 : 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은 상기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